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임헌호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헌호 의원)

가. 제안이유

○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노령·임신·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약자” 및 “관광환경”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추진 사업의 수행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정부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 촉진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고,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보편적 관광복지를 실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관광약자” 및 “관광환경”의 용어를 정의함.
 - 안 제5조(사업의 추진)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안 제6조(재정지원)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사항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서울시는 관광약자에게 보편적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지원기본 계획 수립,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제정. 2017.1.5.)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 “서울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약자 또한 편하게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서울시의 기초를 참고하고, 관광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우리 구(區)에서도 본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신체·사회·환경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여겨짐.
 -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47조의4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5
----------	-----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임헌호, 유승용, 신흥식
전승관 의원(4인)

1. 제안이유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광약자” 및 “관광환경”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 나.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함(안 제3조)
- 다. 본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다른 조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선언적인 관계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주의를 환기하되 구체적, 전문적 사항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함을 명확히 하여 조례 간 체계 정합성을 제고함(안 제4조)
- 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마. 추진 사업의 수행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바. 정부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참여
촉진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표창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2024. 6. 5.~ 6.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나. 장애·노령·임신·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 이동, 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정보·관광지·관광상품·관광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회의 제공
2.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7. 그 밖에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자를 선

정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